

# 예산총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70,048,539	11,101,456
일반회계	353,304,420	10,599,133
특별회계	16,744,119	502,324
기타특별회계	16,744,119	502,324
상수도특별회계	6,020,790	180,624
자활기금특별회계	859,894	25,79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71,953	29,159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4,242,292	127,269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04,140	6,124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281,789	8,454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163,261	124,89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463,20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9억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 (2)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3) 재해대책 및 복구비
- (4)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제 6 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회계년도 중 내시된 교부세, 보조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